

#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783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다. 제출일자 : 2014년 4월 7일
- 라. 회부일자 : 2014년 4월 21일

### 2.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3.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4.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지방공무원 파견요청 근거 마련(안 제2조)
- 나.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하여 구체적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다.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등에 대한 백서발간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5. 검토의견

### 가. 개요

-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신설로 시·도교육청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두는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함)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의 인수인계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나. 주요 조문별 내용

#### 가) 인수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 안 제2조제2항과 제4항에서 교육감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위원

장·부위원장·위원을 추천하되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교육감 소속 직원의 사무직원으로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교체 시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인수위원회 구성원 모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제한함으로써 비록 한시적으로 공직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업무성격에 부합하는 자격을 요구하고 있음.

#### 나) 인수위원회의 회의(안 제4조)

- 안 제4조는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주재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다) 인수위원회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차량 등의 지원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이러한 지원과 안 제2조의 파견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라) 백서발간(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인수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명세서를 백서로 상세히 정리하여 활동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

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음.

#### 다. 종합검토의견

- 다른 시·도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례와 마찬가지로 동 조례안도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그 동안 교육감직인수지원단 등은 자체적으로 조직·운영되어 오다가 상위법령의 개정과 동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그 설치와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된 것인바,
  - 다른 선출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인수위원회 설치와 예산에 관한 지원 없이 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라 업무인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인수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비용은 가급적 예산에 편성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모의 인력 및 예산을 산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참고사항]

### 시·도별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추진 현황

2014. 4. 10. 기준

시.도	조례명	본회의 처리 결과
부산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마침
대전	대전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월1일 원안가결
대구	대구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월27일 원안가결
광주	광주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월13일 원안가결
인천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마침
울산	울산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마침
경기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월13일 원안가결
강원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마침
경북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마침
경남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마침
충북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마침
충남	충청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월10일 원안가결
전북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마침
전남	전라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월21일 원안가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월1일 원안가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월24일 원안가결

#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3.] [법률 제12394호, 2014.2.13., 일부개정]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수위원회는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 파악
2. 해당 시·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교육감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④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4항에 따른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4.5.]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7.6.] [대통령령 제24642호, 2013.6.28., 일부개정]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② 인수위원회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28]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4.4.8.] [법률 제12213호, 2014.1.7., 일부개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